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 4. 20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0. 4. 2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0. 4. 28) 상정

○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0. 5. 1)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가. 제안이유

-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융자지원 범위를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입지지원자금 지원으로 확대하고, 융자대상을 제조업에서 제조업관련 서비스업과 관광호텔사업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보조사업을 신설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적립목표 설정(안 제3조)
 - 2010년까지 총 300억원 조성
- 기금의 용도(안 제5조)
 -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보조
 - 중소기업운전자금 또는 입지자금
 - 기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 융자의 대상(안 제7조)
 - 중소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기업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사업자
 -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 시 또는 시에서 위탁받는 기관에서 분양하는 공장용지 또는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입주한 업체
- 기술개발보조금 교부대상(안 제7조의2)
 - 신제품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개발
 - 설비 및 공정의 개선에 관한 기술개발
- 기술개발심의위원회 설치(안 제15조의2)
 - 보조금 교부대상자 결정 및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기술개발심의위원회의 보조금은 연구기관	○ 보조금은 연구기관에 지급해야 됩니다.

사업입니까?

- 기금회수 책임은 시장입니까, 금융기관입니까?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입니까?
- 관광호텔사업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중도 상업용지 매각과도 관계합니까?
- 융자금 보유액은 얼마이며, 융자실적은?
- 이자차액 보전은 몇 %입니까?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사업입니다.

- 금융기관입니다.
- 서비스 관련업입니다.(운송보관 창고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관리, 방송프로그램 등입니다)
- 네.
- 현재 132억원이며, 실적은 92개 업체 150억원입니다.
총 금액은 자체자금 포함해서 500억원입니다.
- 이자차액 보전은 2%이며, 융자는 업체의 경우 담보가 있을 때 7.25%,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6.25%입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수정안 요지

- 별첨 참조

7. 기타 소수의견 요지

- 기술개발심의위원회 위원은 의결을 원활히 하기 위해 11인으로 결정해야 할 것임
- 조례제정 내용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음. 세밀한 단서사항 필요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306호
의결년월일	2000. 5. 3 (제78회)

제출년월일 : 2000. 5. 1

제 출 자 : 기획재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융자지원 범위를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입지지원 자금으로 확대하고 융자대상을 제조업에서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자, 관광호텔사업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 소기업의 신제품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보조사업을 신설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자라 함은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사업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종의 사업자를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사업자로 하여 좀더 많은 사업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기금의 용도를 시금고의 융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을 시금고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 함으로써 금융기관 선택의 폭을 넓게 하고
- 시금고에 이차차액 보전금 지급에 있어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시금고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금이 꼭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 위원회 위원을 11인으로 하여 의결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기술개발심의위원회의 책임과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위원회에 2명의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골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어의 정의 중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자라 함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사업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종의 사업자를 말한다”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라 함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사업자를 말한다.”로 조정(안 제2조5호)
- 기금의 용도 중 시금고의 융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을 시금고 및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으로 조정(안 제5조제1항1호)
- 융자조건에서 “시금고에 이차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종전 규정대로 시금고에 이차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조정(안 제8조제2항)
- 기술개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수를 11인으로 조정(안 제15조2의제2항)

<p>제8조(융자조건)</p> <p>②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 금리와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8조(융자조건)</p> <p>②.....</p> <p>.....지급할 수 있다.</p> <p>제15조의2(기술개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p> <p>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p> <p>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3. 부천시의회의원 1인</p>	<p>제8조(융자조건)</p> <p>②.....</p> <p>.....지급하여야 한다.</p> <p>제15조의2(기술개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p> <p>②.....11인..</p> <p>③.....부시장.....</p> <p>④.....</p> <p>3.2인</p>
--	---	---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6호
의결년월일	2000. 5. 3 (제78회)

제출년월일 : 2000. 4. 2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융자지원 범위를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입지지원자금지원으로 확대하고, 융자대상을 제조업에서 제조업관련서비스업과 관광호텔사업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보조사업을 신설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금의 적립목표설정(안 제3조)

- 2010년까지 총 300억원 조성

○ 기금의 용도(안 제5조)

-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보조
- 중소기업운전자금 또는 입지자금
- 기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 용자의 대상(안 제7조)

- 중소기업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기업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사업자
-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 시 또는 시에서 위탁받은 기관에서 분양하는 공장용지 또는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입주한 업체

○ 기술개발보조금 교부대상(안 제7조의2)

- 신제품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개발
- 설비 및 공정의 개선에 관한 기술개발

○ 기술개발심의위원회설치(안 제15조의2)

- 보조금교부대상자 결정 및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수정안 포함]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내지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관광업자"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 중 호텔업자를 말한다.
5. "제조업관련서비스업자"라 함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사업자를 말한다.
6.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산업체·학교·관공서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기술개발"이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생산,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또는 연구

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것을 말한다.

- 8. "연구기관"이라 함은 시장과 협약에 의거 중소기업의 기술적인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기금은 2010년까지 총 300억원을 조성한다.

제5조제1항 중 1호를 3호로 하고, 3호를 4호로 하며, 2호를 1호로 다음과 같이 하고,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시금고 및 기타 금융기관의 용자(이하 "중소기업운전자금, 입지자금"이라 함)에 대한 이차차액보전
- 2.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보조

제6조제1항제2호에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다만,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

동조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기금관리 시금고 이외의 금융기관 자체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

③시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협조융자를 할 수 있다. 다만, 협약된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차차액은 기금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1호 내지 제6호를 신설한다.

①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부천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1. 중소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 중 기업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등기일, 개인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인 자
-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 중 호텔업자
- 4.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 5. 시 또는 시에서 위탁받은 기관에서 분양하는 공장용지 또는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입주한 업체
다만, 공장용지 또는 아파트형공장 분양에 따른 자금신청자는 부천시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자에 한함
- 6. 기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기술개발보조금교부대상) ①시장은 부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 1. 신제품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개발

- 2. 설비 및 공정의 개선에 관한 기술개발
- 3. 기술경영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
-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보조금교부대상업체에 대한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대상,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제1항 중 “운전자금”을 “운전자금, 입지자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의 “3퍼센트 낮게 한다.”를 “낮게하며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의 “3년 이내로 한다.”를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술개발보조금 교부조건)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1. 사업을 변경 또는 중지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 2. 사업이 예정기일 내에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할 것
- 3. 기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의 제목 중 “융자계획의 공고”를 “공고”로 하고, 제9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매년 기술개발보조금 교부 이전에 연구개발총액, 과제당연구개발비, 대상, 조건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융자신청”을 “신청”으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신설한다.

①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2. 중소기업 입증자료
- 3. 기타 제출서류

②제7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개발자금을 받고자 할 경우 대학, 국책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과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교부신청서
- 2. 사업계획서

3. 협약서

4. 기타 제출서류

제11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보조금결정 및 교부) ①시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며, 교부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자 및 연구기관에 그 결정 내용과 교부 조건을 통지한다.

②제10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일시불 또는 분할로 교부하며, 보조금의 교부는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③연구기관은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세부사업계획서의 접수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13조제2항의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에 의한 경우에는 3개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제8조의2 및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결정취소 또는 사업이 중지된 경우 그 취소된 사업부분에 이미 보조금이 교부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중 이미 수행된 부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조금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사업을 완료 또는 중지하였을 때
- 2.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 3. 사업자가 파산하였을 때
-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기술개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제7조의2에 의한 교부 대상자 결정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2인
- 2. 대학교수 3인

3. 부천시의회 의원 2인

4. 기업체 연구소장 2인

5. 기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위원 중 부천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분야별 연구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
2. 보조금의 교부대상자 결정 및 보조금액에 관한 사항 심의
3. 사업운영 실적보고서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심의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구기관은 사업을 완료 또는 중지할 때와 제13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운영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2조(정의)
	다음과 같다.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3.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	
			다.	
		4.	"관광업자"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	
			박업자 중 호텔업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②(생략)

(신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 1. (생략)
- 2. 시금고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차차액보전

(신설)

3. (생략)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생략)

- 1. (생략)
- 2. 시금고는 예치금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융자 대상업체 결정 통보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기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5. "제조업관련서비스업자"라 함은 소기업지원
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사업자를 말한다.

6.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이라 함은 중소기업
의 생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
함을 해결하기 위한 산업체·학교·관공서 공동
연구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
조금을 말한다.

7. "기술개발"이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생산, 판
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또는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것을 말
한다.

8. "연구기관"이라 함은 시장과 협약에 의거 중
소기업의 기술적인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②(현행과 같음)

③기금은 2010년까지 총 300억원을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

3. (현행과 같음)

1. 시금고 및 기타 금융기관의 융자(이하 "중소
기업운전자금, 입지자금"이라 함)에 대한 이차
차액보전

2.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보조

4.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2.
.....
.....

다만,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

3~6(생략)

②(생략)

1~5(생략)

(신설)

제7조(유자대상) ①시장은 부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에 대하여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1호~6호신설)

(신설)

3~6(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5(현행과 같음)

6. 기금관리 시금고 이외의 금융기관 자체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사항

③시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협조융자를 할 수 있다. 다만, 협약된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은 기금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7조(유자대상) ①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부천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 중 기업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인 자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 중 호텔업자

4.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5. 시 또는 시에서 위탁받은 기관에서 분양하는 공장용지 또는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입주한 업체 다만, 공장용지 또는 아파트형공장분양에 따른 자금신청자는 부천시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자에 한함

6. 기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제7조의2(기술개발보조금 교부대상) ①시장은 부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 1. 신제품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개발
- 2. 설비 및 공정의 개선에 관한 기술개발
- 3. 기술경영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
-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보조금교부대상업체에 대한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대상,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용도는 기업경영 안정을 위한 윤전자금에 한하며,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생략)
- 2. 대출금리는 시금고의 일반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낮게 한다.
- 3.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생략)
- (신설)

제8조(융자조건) ①.....
.....윤전자금, 입지자금.....
.....

- 1. (현행과 같음)
- 2.낮게 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3.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제8조의2(기술개발보조금 교부조건)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1. 사업을 변경 또는 중지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 2. 사업이 예정기일 내에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 신고할 것
- 3. 기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기금의 융자 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한도액, 융자대상, 융자조건 및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10조(융자신청)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3 (생략)

(신설)

제11조(평가 및 선정) ①시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 평가하여 업체별 지원순위를 정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시금고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9조(공고) ①.....

②시장은 매년 기술개발보조금 교부이전에 연구개발총액, 과제당연구개발비, 대상, 조건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 ①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②제7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대학, 국책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과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교부신청서
- 2. 사업계획서
- 3. 협약서
- 4. 기타 제출서류

제11조(평가 및 선정) ①..... 제10조제1항.....

②(현행과 같음)

(신설)

제11조의2(보조금결정 및 교부) ①시장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며, 교부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자 및 연구기관에 그 결정 내용과 교부조건을 통지한다.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일시분 또는 분할로 교부하며, 보조금의 교부는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③연구기관은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세부사업계획서의 접수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13조(융자금의 상환)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③(생략)

(신설)

제13조(융자금의 상환) ①(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천재지변 등에 의한 경우에는 3개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제8조의2 및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결정취소 또는 사업이 중지된 경우 그 취소된 사업부분에 이미 보조금이 교부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중 이미 수행된 부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시금고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제14조(변경사항 통보) ①.....
.....
.....

②보조금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

(신설)

고 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완료 또는 중지하였을 때

2.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3. 사업자가 파산하였을 때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의2(기술개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①시

장은 제7조의2에 의한 교부대상 결정 등 보조금
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
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선출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2인

2. 대학교수 3인

3. 부천시의회 의원 2인

4. 기업체 연구소장 2인

5. 기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⑦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⑧위원회의 위원 중 부천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비 및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제15조의3(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분야별 연구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
2. 보조금의 교부대상자 결정 및 보조금액에 관한 사항 심의
3. 사업운영 실적보고서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심의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제16조(보고) ①~②(생략)

제16조(보고) ①~②(현행과 같음)

(신설)

③연구기관은 사업을 완료 또는 중지할 때와 제13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운영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